

속초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 (안)

議案	
番號	72

提出年月日 : 1992. 3.

提 出 者 : 束 草 市 長

□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

- 소방법 개정으로 1992.1.1 부터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국가에서 도지사로 전환되어 소방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.3.6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
- 현행 속초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 (안)

속초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3월 6일 부터 적용한다.